제249회 영등포구의회
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2023. 11. 27.

行 政 委 員 會
專門委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261호로 2023년 11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제증명 종목 추가를 통해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 추가(안 제3조제2항제10호)

나. 수수료액표에 제증명 종목 추가(안 별표 제1호거목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보건법」,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.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.

라. 입법예고(2023. 10. 5.~10. 25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은**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가 일부 개정(시행. 2023.7.6.)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제증명 종목 추가를 통해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**주요내용을 살펴보면**

- **안 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**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.
- **안 [별표](수수료액 표)**에서는 제1호(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, 제증명) 거목에 외국인 결핵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(1,500원/1통) 항목을 신설함.

○ **검토 결과**

-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는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3년 7월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,

이에 따르면 장기등기증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[1].

- 법무부에서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결핵 고위험국가[2]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 사증을 소지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경우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 대해 결핵진단서 제출이 2022년 12월부터 의무화 되었음.
- 본 안건은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 면제 대상자 및 제증명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,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---

1) 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(예우 및 지원)**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7. 6.>
1.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

2) **결핵 고위험 국가(35개국)**: 네팔, 동티모르, 러시아, 말레이시아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태국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키르기스스탄, 파키스탄, 필리핀, 라오스, 카자흐스탄, 타지키스탄, 우크라이나, 아제르바이잔, 벨라루스, 몰도바공화국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에티오피아, 케냐, 콩고민주공화국, 모잠비크, 짐바브웨, 앙골라, 페루, 파푸아뉴기니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54조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 지역보건법

제25조(수수료 등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
제11조(예우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7. 6.>

1.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
2.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
3.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
4.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
5. 감사장 수여(영등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)

②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7. 6.>

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7. 6.>